「시설 사용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7. 3. 1. 개정 판 (시행 2017. 3. 1.) → 2018. 11. 19. 개정 판 (시행 2019. 1. 1.)

바뀜 7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55/compare?from=386&to=889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6:39:48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코이노이아홀,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개정 2016-02-29〉〈개정 2017-03-01〉 ② 차량 — 버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	**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이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나.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강당 및 강의실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03-01〉 ≣ 유료 대관 할인 기준〈개정 2017-03-01〉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1. 시설 및 장소사용료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나.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강당 및 강의실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현 행	개 정 안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소속 기관의 행사 시 기타 교단/재단 소속으로 고정으로 이용하는 단체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종교행사, 지역공공기관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 세미나실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40% 공공기관 /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현 행	개 정 안
15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3건 이내 야외예배(안) 100,000 100,000 100,000 1일 3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10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 세미나실 15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4건 이내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 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23실

현 행	개 정 안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일반강의실 대(80명이상) 200,000 중(40≦ 60)명 160,000 소(30명) 10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200,000 50,000 1일 – 4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3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2층 숙소) 주말 60,000 평일 40,000 교직원 무료, 단, 난방비 1일 2만원, 2일 부터는 1만원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개정 2017-03-01〉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강의실(1일) 100,000 로뎀관 침실 30,000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생활교육관 침실 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20,000 5,000 일반강의실 (80명이상) 100,000 50,000) 80,000 40,000 소(30명) 60,000 3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5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현 행	개 정 안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50,000 101Km~200Km 1회 사용 400,000 201Km~300Km 1일 사용 450,000 301Km~400Km 1일 사용 500,000 401Km~500Km 1일 사용 550,000 501Km 이상 1일 사용 6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절기 200,000 1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동절기(12-2월) 하절기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 부터는 1만원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2.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50,000 101Km~200Km 1회 사용 400,000 201Km~300Km 1일 사용 450,000 301Km~400Km 1일 사용 500,000 401Km~500Km 1일 사용 5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6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1-01〉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 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안면도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 버스 대여〈신설 2016-11-01〉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신설 2016-11-01〉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신설 2016-11-01〉 ② 시설사용 1주일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7-03-01〉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 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홀, 체 육문화센터, 운동장, 버스 대여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 ② 시설사용 1주일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03-01〉	**제7조(인건비지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03-01〉	**제8조(기타)**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개정 2016-02-29〉"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제4조 중 "총무과며"를 "총무과이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1. 시설 및 장소사용료
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나.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강당 및 강의실은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40%
공공기관
/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
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
세미나실
15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4건 이내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후 사용할 경우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23실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강의실(1일)
100,000
로뎀관
침실
30,000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생활교육관
침실
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20,000
5,000
일반강의실
(80명이상)
100,000
50,000
)
80,000
40,000
소(30명)
60,000
3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5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1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동절기(12-2월)
하절기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 부터는 1만원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2.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50,000
101Km~200Km
1회 사용
400,000
201Km~300Km
1일 사용
450,000
301Km~400Km
1일 사용
500,000
401Km~500Km
1일 사용
5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600,000
도로비, 주차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절차)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 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물, 기타: 대강당, 보건복지기념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홍명기홀, 장근청홀, 체육문화센터, 운동장, 버스 대여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100만원 이상
3. 행정협의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

② 시설사용 1주일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정한다.〈개정 2017-03-01〉"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